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2013. 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13.6.19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구분	변경전 ('13. 6.19이전)	변경후 ('13. 6.19~)	소관부처
취업제한시설 (법 제56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li> <li>○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li> <li>○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li> <li>○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li> <li>○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li> <li>○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신 설)</li> </ul>	<p><b>&lt;추가 취업제한시설&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비업법인(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li> <li>○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PC방)</li> <li>○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li> <li>○ 청소년활동기획업소</li> <li>○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li> <li>○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li> <li>○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업 등</li> </ul>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 및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 교습소</u></li> <li>※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성인대상 어학·통역, 성인교사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외), 교습소</li> </ul>	교육부
체육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u>(「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li> <li>※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li> </ul>	문화체육관광부
성범죄경력 조회 (법제56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설립인가·신고서를 관할하는 기관의 의료기관 운영자 성범죄경력조회 불가</li> <li>○ 취업제한 대상기관 운영자 성범죄경력조회 시 <b>본인 동의 필요</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설립인가 등을 관할하는 기관의 의료기관 운영자 성범죄경력조회 가능</li> <li>○ 취업제한 대상기관 운영자 성범죄경력조회 시 <b>본인 동의 불필요</b></li> <li>※ 단, 취업제한 대상기관 운영자는 <b>소속 중 사자(예정자포함) 본인 동의</b>를 받아 성범죄경력조회 요청 가능</li> </ul>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구분	변경전 ('13. 6.19이전)	변경후 ('13. 6.19~)	소관부처
권한위임 (시행령 제33조)	(신 설)  (신 설)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점검·확인 권한을 지자체에게 위임  ○ 경찰청 경비업 법인 점검·확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	보 건 복지부, 경찰청
과태료 (시행령 제40조 별표4)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횟수별 차등부과(1차: 200만원, 2차: 25 0만원 3차: 300만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횟수별 구분없이 과태료 최고 금액 부과(300만원)	공 통

# 목 차

##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b>I. 제도개요</b> .....	<b>7</b>
1. 관련법령 .....	7
2. 제도 도입배경 .....	7
3. 주요내용 .....	7
<b>II.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b> .....	<b>8</b>
1. 취업제한대상자 .....	8
2.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	8
3. 취업제한 내용 .....	10
4.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 .....	10
5. 성범죄경력 확인 의무 .....	13
6. 법 위반 시 조치 .....	13
6. 권한 위임내용 및 위임기관 현황 .....	14
<b>III. 성범죄경력 조회방법</b> .....	<b>16</b>
1. 성범죄경력 조회 .....	16
2.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	16
3. 제출서류 .....	17
<b>IV. 성범죄 경력자 취업점검·확인</b> .....	<b>18</b>
1. 제도개요 및 관련법령 .....	18
2. 점검·확인 추진체계 .....	18
3. 권한의 위임 및 위임기관 현황 .....	18
4. 추진사항 .....	19

## 제1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V. 점검 · 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 21

1. 제도개요 .....	21
2. 공개방법 및 절차 .....	21
3. 점검 · 확인 결과 공개 절차 .....	22
참고1. 관련서식 .....	23
참고2.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	32
참고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	36

### 제 2 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1. 제도개요 .....	47
2. 주요내용 .....	47
3. 신고절차 및 방법 .....	47
4.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	48
5. 신고의무 대상시설 .....	48
6. 신고의무 대상시설 종사자 교육 .....	49
참고.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	50

### 부록 ..... 53

#### ☒ 취업제한 목적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 ☒ 취업제한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됨  
(단, '06.6.30~'08.2.3 기간 중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5년간 적용)  
※ 성인대상 성범죄자: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 취업제한대상기관

-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체육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 의료기관(의료인) ·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12. 8. 2 이후부터 적용)
- 경비업 법인(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PC방), 복합유통계입제공업(멀티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 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등 \* '13. 6.19 이후부터 적용

#### ☒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경력 조회의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입증하는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경력 조회방법)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형사과)에 신청함

## ☒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폐쇄

## 1 제도개요

### 01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노무제공 포함) 또는 운영이 제한됨(법 제56조)
    -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시행('06.6.30)  
(단, '06.6.30~'08.2.3 기간 중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5년간 적용)
    -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02 제도 도입배경

- 유치원, 학교, 학원, 아파트,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

### 03 주요내용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및 방법
-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권한 위임
-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의무화 및 점검·확인 결과 공개
- 성범죄경력 조회 미 이행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폐쇄 조치

##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① 취업제한대상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음(법 제56조)  
(단, '06.6.30~'08.2.3 기간 중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5년간 적용)
  -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 선고유예자, 기소유예자, 공소기각 된 자는 대상이 아님

### ②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 2006. 6. 30~2008. 2. 3까지 : 5년
    - 2006. 6. 30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적용
  - 2008. 2. 4 이후 : 10년
    - 2008. 2. 4~2009. 12. 31 : 2008. 2. 4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적용
    - 2010. 1. 1~2010. 4. 14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로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적용
    - 2010. 4. 15 이후 : 2010. 4. 15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로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적용
- 시설(기관)별 확대 적용시점
  - 2006. 6. 30부터 적용
    - 학교,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보육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체육시설
  - 2008. 2. 4부터 적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 2010. 1. 1부터 적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010. 4. 15부터 적용 : 개인과외교습자
- 2012. 8. 2부터 적용(형확정일 기준 적용) :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 2013. 6. 19부터 적용 :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등

<총괄 현황표>

대상기관의 종류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2006. 6. 30. ~ 2008. 2. 3.	2008. 2. 4. ~ 2009. 12. 31.	2010. 1. 1. ~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가.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6조 제 1항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 제 6호(청소년상담센터), 제 7호 및 제 8호	제 20조 제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형 확정일 부터 5년 간 취업제한 (법률 제 7801호)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 8634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 10260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 11287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 11572호)
나. 체육시설	법 제 56조 제 11항 제 11호	"	"	"	"	"
다.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법 제 56조 제 9항, 제 10호	해당 없음	"	"	"	"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 제 56조 제 1항 제 6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마. 개인과외교습자	법 제 56조 제 3항 제 3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바. 의료기관,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법 제 56조 제 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 2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사. 경비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법 제 56조 제 13항 제 13호부터 제 17호까지 및 영 제 24조 제 11항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3 취업제한 내용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운영 제한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노무제공 포함) 제한
  - ※ 타기관의 직원이라도 파견형태 등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됨

4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법 제 56조 제 1항)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1.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 2조 제 2호	교육부, 교육청	
2.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2조	"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2, 3호	"	평생직업교육학원(성인대상 이학, 통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외)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조 제 1항 및 제 31조 제 1호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5.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 35조	여성가족부	
6.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조 제 2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6.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문화시설>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 음악당 등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 기타 :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 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3호의 '문화시설'(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이용시설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미래창조과학부, 지방자치단체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2호	교육부, 교육청	"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 14, 19조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수목원	'수목원조성및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5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기타>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이용시설(시행령 제17조8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체육시설(시행령 제2조 1호, 제3조, 시행령 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7.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10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8.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제52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9.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주택법' 제2조제2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11.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2.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의료법' 제3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2.8.2부터 시행
13.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여성가족부	'12.8.2부터 시행
14. 게임(시설)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3.6.19부터 시행
15.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	「경비업법」 제2조	경찰청	'13.6.19부터 시행
16.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7호, 제9조의2 참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3.6.19부터 시행
17.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3.6.19부터 시행
18.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13.6.19부터 시행

※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범위(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5 성범죄경력 확인 의무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확인 의무(법 제 56조제3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치를 요청함
    - ※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위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외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단시간 강사,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교생실습자 등(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경비업무 종사자만,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해당)  
☞의료기관이라 함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등을 포함함.

## 6 법 위반 시 조치

- 성범죄 경력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3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위반회수별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이상 위반 : 500만원)
-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법 제58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위반회수별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 : 600만원, 2차 위반 : 80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7 권한 위임내용 및 위임기관 현황

- 권한 위임
  -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시·도(교육감) 및 시·군·구(교육장), 지방경찰청장에 위임됨(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33조)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 권한 위임내용
  -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법 제57조)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취업자의 해임 및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법 제58조)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7조)
- 중앙행정기관 권한위임 현황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관련('13.6.19. 시행)

취업제한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위임기관)	위임현황(위임된 기관)	비 고(관리담당부서)
1. 유치원	교육부	- 시·도(교육감) : 공립유치원(시·도 설치), 사립유치원 - 시·군·구(교육장) : 공립유치원(시·군·구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경우 조례 적용(교육청)
2. 학교	교육부	- 시·도(교육감)	(교육청)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육부	- 시·군·구(교육장)	(교육청)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청소년업무담당부서)
5.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실)
6. 청소년활동시설(수련 및 이용시설)	여성가족부	- 시·도 : 청소년활동시설(시·도설치) - 시·군·구 : 청소년활동시설(시·군·구, 개인·법인·단체설치)	(수련시설 : 청소년업무담당부서) (이용시설 : 해당시설관리부서)
7.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 시·도 : 보육시설(시·도설치) - 시·군·구 : 국공립외의 어린이집, 시·군·구설치 어린이집	(보육업무담당부서)
8. 아동복지시설	보건복지부	- 시·도 : 아동복지시설(시·도설치) - 시·군·구 : 아동복지시설(시·군·구설치, 개인·단체 등 설치)	(아동복지업무담당부서)

취업제한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위임기관)	위임현황(위임된 기관)	비 고(관리담당부서)
9. 청소년지원시설	여성가족부	- 시·도 : 청소년지원시설(시·도설치) - 시·군·구 : 청소년지원시설(시·군구, 개인·단체 등 설치)	(성매매방지업무 담당부서)
10. 성매매 피해상담소	여성가족부	- 시·도 : 성매매피해상담소(시·도설치) - 시·군·구 : 성매매피해상담소(시·군·구, 개인·단체 등 설치)	(성매매방지업무 담당부서)
1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국토교통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공동주택업무담당부서)
12.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전문체육시설(시·도설치), 직장체육시설, 등록대상체육시설 - 시·군·구 : 전문체육시설(시·군·구설치), 생활체육시설, 신고대상 체육시설	(체육업무담당부서)
13.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 시·도 : 의료기관(시·도 개설, 허가 대상 의료기관) - 시·군·구 : 의료기관(시·군·구 개설, 신고대상 의료기관)(‘13.6.19. 이후 적용)	(의료기관, 의료인 담당부서)
14. 경비업 법인	경찰청	- 지방경찰청(경찰관서) (확대적용)	(경비업 담당부서)
15.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여성가족부	-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등(확대 적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담당 부서)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문화체육관광부	-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등(확대 적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담당 부서)
17.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문화체육관광부	-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등(확대 적용)	(인터넷게임 및 노래방 등 담당 부서)

※ 시설(기관) 설치의 범위는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을 포함

### 3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 1 성범죄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는 조회대상자에 따라 경력조회 의무자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56조제3항, 시행령 제25조).
- 경력조회 의무자 및 조회대상자

경력조회 의무자	조회대상자	비 고(주요 구비서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13.6.19부터 본인 동의서 불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 예정자	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

#### 2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경찰서(형사과)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취업(예정)자로부터 동의를 제출받아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형사과)에 동의를 첨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함
- 경찰서에서는 ‘범죄경력 회신서’에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만을 확인하여 회신함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경력이 있는지와 언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최종 확인한 후 결과를(○, ×)를 회신
  -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

### 3 제출서류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서식 1)
  -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위임 시
    - 기관장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서식 5),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제출(설치신고증에 설치자가 법인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관장의 신분증 대신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가능)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서식 2)
  - ※ 동의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교사와 같이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입증하는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신고 또는 인·허가시설(기관)이 아니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사무소(등록·신고 제외대상) : 주민자치회의 등에서 결정된 대표자가 확인증(서식 4)을 첨부하여 신청
- 기타기관 : 관련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자가 확인증(서식 4)을 첨부하여 신청
  -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 4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 1 제도개요 및 관련법령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이 의무화 됨.(‘12. 8. 2부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

### 2 점검·확인 추진체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간계획 등에 의한 점검·확인 및 지자체·교육청과 공동으로 점검·확인 추진

점검·확인 주관기관	점검방식
중앙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 (연간)계획 수립 후 점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교육청) 공동 점검가능)</li> </ul>
* 지자체,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교육청 (연간)계획 수립 후 점검</li> </ul>

※ 지자체·교육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점검·확인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도 단위에서 점검·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하여 시·도별로 통일성 있게 점검·확인을 추진하고, 점검·확인 결과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

### 3 권한의 위임 및 위임기관 현황

- 권한 위임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법 제57조)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 및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법 제58조)
  - 과태료 부과(법 제67조)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성범죄 경력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의 장

○ 대상기관별 권한 위임현황

- 관계 중앙행정기관 점검·확인 : 시·도(교육감), 시·군·구(교육장)에 위임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	점검자(위임)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시·도, 시·군·구
• 교육부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교육감, 교육장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시·군·구 (특별자치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 대중문화에술기획업소	시·도, 시·군·구
• 경찰청	경비업 법인	지방경찰청(경찰관서)

4 추진사항

가. 점검·확인 개요

○ 점검·확인 실시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교육청은 자체 실정에 맞는 점검계획 수립 후 년 2회(상·하반기) 이상 점검·확인 실시

※ 중앙행정기관 주관(계획)하에 지자체,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모두 점검실적으로 인정

○ 점검·확인 내용

-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성범죄경력 조회 이행여부 확인 등

○ 점검·확인 방식

1)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

• **(점검·확인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직접 경찰서에 경력조회를 요청(본인의 동의 불요)하는 방법으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확인(※경력조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자료 요구 가능)

※ 법 제57조에 따라 점검·확인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불요(법제처 유권해석 : 11-0351) 및 해당 조항 법개정 완료('13.6.19 시행)

2) 경력조회 이행 여부 확인

• **(점검·확인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경력조회 이행여부 등을 확인(현장점검, 서식 6 참조)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경력조회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병행

○ 점검·확인 규모(방법)

• (전수조사) 소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준일을 정한 후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를 조사  
• (부분조사) 소관시설 전체에 대하여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계획을 세우거나 최초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한 지 일정기간이 지난 사람(최근연도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등  
(예, 전체 소관시설의 1/2, 1/3, 1/4 등)

나. 법 위반 시 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정치를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

○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요구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2항)

○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요구(법 제58조)

※ 취업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임, 기관폐쇄 등 조치

## 5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 1 제도개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을 함.
-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에 3개월 이상 공개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3항)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27조)

### 2 공개방법 및 절차

- (공개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법 제57조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 (공개기간)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하되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공개함.
- (공개방식)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공개사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총 기관 수, 점검·확인 기간, 점검·확인 기관, 점검·확인 인원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명칭 주소 등(※공개서식 : 서식 7, 8 참조)
- (적용대상) '12. 8. 2 이후 추진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위반 등 점검·확인 결과

## 3 점검·확인 결과 공개 절차

- 기관별 점검·확인결과 공개 절차(예시)

점검 주관기관	점검결과 제출 및 공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점검 포함)	☞ 중앙행정기관(점검 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 ⇒ 여성가족부 공개(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자체, 교육청 등	☞ 시·도(특별자치시·도 포함), 교육청(점검 완료일로부터 40일 이내) ⇒ 중앙행정기관(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여성가족부 공개(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시·군·구, 교육지원청(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도, 교육청(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중앙행정기관(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여성가족부 공개(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점검·확인 결과 공개 요령
  - 중앙행정기관은 점검·확인 결과를 반드시 점검·확인 각 지자체 및 교육청의 개별 점검·확인 건별로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점검·확인 결과 제출 기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교육청 등의 점검·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 가능
- 공개경로
  -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 → 열람마당 →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공개

참고 1

관련서식

■ [서식 1]

[별지 제9호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

####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며, 조회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신청서에 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서식 2]

[별지 제10호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3]

[별지 제11호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 과 여권번호 또는 외 국인 등록번호	
	주 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		[    ]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10. 4. 15. 이후)
-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10. 4. 15. 이후)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가.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청소년쉼터), 제7호 및 제8호	제20조 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7801호)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8634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10260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11572호)
나. 체육시설	법 제56조제1항 제11호	"	"	"	"	"
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법 제56조제1항 제9호, 제10호	해당 없음	"	"	"	"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 제56조제1항 제6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마. 가인도외교습사	법 제56조제1항 제3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바. 의료기관, 가정 방문 학습지 교사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사. 경비업, 인터넷·유통·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계영재교육업소, 청소년실용·기능교육업소	법 제56조제1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영 제24조제1항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바목의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는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확 인 조

기관명 :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근무기간 :

상기 본인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위 기관의 대표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시설)명
위임 사유		

※ 지참서류: 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 . . . . .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p>1.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p> <p>2. 위임장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오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p>

###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 시설(기관)명 :                      ○ 시설장(운영자) :  
 ○ 소재지 :                                      (☎ :                      )  
 ○ 근무인원(현원) :            명            ○ 이용인원(연간) :            명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취지)에 대한 이해		
2. 지자체 또는 교육청, 협회 등으로부터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교육안내 통지 또는 홍보자료 수령		
3.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교육 참석		
4. 취업예정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5. 재직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6.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확인 및 조치사항		
7.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기타	예) 근무인원과 조회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 등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부처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공개내용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사항	총괄개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분류명(분류별 전체 개소수)		전체    개소 (기준일 :    )
		예) 학교(    개소), 유치원(    개소), 학원(    개소)		
		점검·확인 기간		~
	점검·확인 기관 수		예) 학 교(    개소) 유치원(    개소) 학 원(    개소)	
	점검·확인 인원(조회인원수)		예) 학 교(    개소) 유치원(    개소) 학 원(    개소)	
	점검·확인기관 중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현황 및 조치사항	기관명	주 소	운영 또는 취업자 수	조치결과 또는 조치필요 사항
		예)○○특별시(광역시·자치시 또는 도) ○○시(군·구)	예) ○명 (운영자 수 ○명, 취업자 수 ○명)	예) ○○조치 또는 ○○조치필요
공개기간	~			
공개장소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기타사항	기관별 점검확인 결과 현황(서식8) : 첨부			

## 기관별 점검·확인 결과 현황(예시)

(부처명 또는 지자체, 02-000-0000)

번호	점검·확인 기관명	점검 대상 시설 유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총 수	점검·확인 기간	점검·확인 기관 수	점검·확인 인원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현황			
							기관명	주 소	운영 또는 취업자 수	조치결과 또는 조치필요사항
1	예) ○○부처	학원 교습소	개소 개소	~	개소 개소	명 명	예)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도) ○○시(군·구)	예) ○명 (운영자 수 ○ 명, 취업자 수 ○ 명)	예) ○○조치 또는 ○○조치필요	
2	예) ○○교육청	학교	개소	~	개소	명				
3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총 수 : 점검대상 지역(전국, 시·도, 시·군·구)에 있는 시설 현황임

**참고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 내 용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법 제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자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사람의 심신상실을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위계(偽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 상기 사항에 대한 미수범
-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 ◆ 강간 등 상해·치상(법 제9조)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강간 등 살인·치사(법 제10조)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법 제11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미수범도 처벌)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별규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법 제12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미수범도 처벌)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법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 제14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 알선영업행위 등(법 제15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2호)
    -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제3호)
    -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위 변천 현황표

아청법 개정 시행일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세부조항
2008.6.30	제5조내지 제10조의 죄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제6조(특수강간등),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2008.2.4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제6조 (특수강간등),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2조 (미수범)
2010.1.1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제6조 (특수강간등),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2조 (미수범)
2011.1.1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의 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4조(미수범: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
2012.3.16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추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013.6.19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추가)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신설(조항조정)

□ 성인대상 성범죄

○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목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미수범·3조부터 9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 제12조는 '13. 6.19.부터 적용,

참고 3

Q & A

취업제한제도 일반

**Q**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A**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조치입니다.

**Q**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상 성범죄 및 대상 기관별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 A**
- 취업제한제도는 2006.6.30일부터 시행되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5년 동안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임
  - 2008. 2. 4일부터는 취업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추가
  - 2010. 4.15일 부터는 대상범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확대하였으며,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
  - 2012.8.2일부터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를 추가
  - 2013.6.19일부터는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 일반PC방, 멀티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일반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 등으로 확대 시행

**Q** 성범죄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A**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고용형태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일일강사 포함) 등이 모두 해당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생실습자 등도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됨  
 ※ 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업무 종사자만, 의료기관은 의료인에 한하여 취업이 제한됨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

분류	시설현황	비고
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유치원</li> <li>▶ 학교교과교육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성인대상제외),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li> </ul>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li> <li>▶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li> <li>▶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공동생활가정</li> <li>▶ 지역아동센터</li> <li>▶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22조 적용(「의료법」에 대한 특례 :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종사자(의료인)</li> </ul>	
청소년 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li> </ul>	
문화시설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영화상영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li> <li>▶ 과학관,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li> <li>▶ 야외음악당 등 공연시설</li> <li>▶ 화랑, 조각공원 등 전시시설</li> <li>▶ 지역문화복지시설</li> <li>▶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li> </ul>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각종 체육도장, 당구장, 썰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체육도장 등 (무도화원, 무도장 제외)</li> </ul>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li> <li>▶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업</li> </ul>	‘13.6.19 시행

Q 취업제한제도는 2006.6.30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2006.6.30 이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2006.6.30 이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2006.6.30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즉, 성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서에 요청하더라도 2006.6.30일 이전의 범죄는 '성범죄 경력 없음'으로 회신되므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Q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취업 중인 경우 관련시설의 장은 성범죄 경력자에 의한 성범죄 발생 시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발될 경우 기관장에게 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을 폐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Q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그 형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A
- 형 확정 후 교도소 재소자 : 출소 하고난 후부터 10년간
  - 형 확정 후 집행이 유예·면제된 자 : 형 확정 후 10년간

Q 2010. 4. 15일부터 취업제한 대상자가 성인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되었는데, '성인대상 성범죄'는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이지요?

A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말합니다.

Q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A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2-0435)

## 성범죄 경력 조회

**Q**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경력 조회’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경력은 2006.6.30일 이후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2010.4.15이후 발생한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말합니다. 경찰서(형사과)에 조회를 요청하면 다른 범죄는 제외하고 성범죄 유무만을 회보하여 취업제한여부를 판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취업하고자 하는 자(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 후 취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 후에 확인해도 관계없는 것인가요?

**A** 취업예정자의 경우는 취업하고자 할 때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성범죄자를 사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Q**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무관하게 내국인과 같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단지, 외국인의 성범죄경력 조회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만 알 수 있습니다.

**Q**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에 ‘처리기간-즉시’로 되어 있는데, 즉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Q** 계약직 근로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 중이며, 예산 등에 의거 연초에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까?

**A**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무하게 될 경우 최초 확인하였던 ‘성범죄경력 조회서’로 대처 가능 합니다. 다만, 당해 관련기관장이 추가 조회요청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재계약 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Q** 단기간(1일 강사, 1주일 강사) 근무자도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까?

**A** 단기간 강사의 경우도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 공동주택의 경우 조회권자를 관리소장 1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장도 조회권자로 보아야 되는지요?

**A** 주택법 제2조제2호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조회권자가 됩니다. 다만, 별개의 약정으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역할을 대체하는 권한이 있는 자(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조회권자로 보아야 합니다.

**Q** ‘개인과의 교습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과의 교습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회신시) 교육기관의 장임을 어떻게 확인하여야 합니까?

**A** 현재 학원법에는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개인과의 교습자’라는 확인 서류가 없음. 따라서 ‘개인과의 교습자’라고 본인이 신청하면 학생증을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자원봉사자와 공익근무요원은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자가 되는지?

A
•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님, 단지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없어 경력조회 대상이 됩니다.
•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상 노무제공자에 해당되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며, 경력 조회 결과 취업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관할 병무청에 해당 공익근무요원의 재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Q 공공기관인 의료기관에서 공무원 임용 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경력 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A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내역에 대해서만 회보되며 적용기간이 다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 경력의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성범죄경력 조회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A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청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동의서 없이 성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종사자의 경우, 운영자가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Q 성범죄경력 조회 주기는 얼마 주기로 해야 하는지요?

A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범죄경력 조회 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최초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 후에도, 항상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바, 추가로 경력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Q 201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포함되었는데 의료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으로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이에 해당되며,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사무직 직원 등은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태료 관련

**Q**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 됩니까?

**A** '10.1.1일 이후부터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Q**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누가 하나요?

**A** 과태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Q**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근무 중인 자에 대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해고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

**A** 취업(채용)할 당시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하도록 하였다면, 이후 취업 중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Q**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료인이 성범죄 경력조회에 동의하지 않아 경력 조회를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A** 의료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본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적극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의료기관의 장이 아청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과 동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취업 중 인자의 성범죄 경력조회가 의료기관 장의 법적 의무사항임을 고지하면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한 동의를 서면 등으로 수회 요청하는 등 동의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면 의료기관의 장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성범죄 경력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임사유로 규정하는 적극적인 노력 필요

의료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의료인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그 사정을 아청법 제56조제1항의 점검·확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경력조회 없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아청법 상 해임대상입니다.

## 제2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1 제도개요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2 제도개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설('06.6.30)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08~)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10.1.1) 및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12.8.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4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300만원), 2차 위반(300만원), 3차 위반(300만원)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세부 기준 변경 ('13.6.1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4  
위반횟수별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 : 300만원

### 3 신고절차 및 방법

-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 4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4항)
-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5 신고의무 대상시설(법 제34조제2항)

신고의무 대상시설	근거법률	취업제한 대상시설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2.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
3.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
4.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
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6.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
7.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	○
8.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	○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0.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1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12.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 제1호	○
1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

※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책임자,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임

## 6 신고의무 대상시설 종사자 교육

- 교육목적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홍보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 시설 종사자의 관심제고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대처능력 제고로 성범죄 피해 최소화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주요내용
  - 교육일정 : 매년 5~11월(예정)
  - 운영방법 : 전문기관에 교육위탁
  - 교육대상 : 성범죄자 취업제한 또는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책임자·종사자 및 업무담당 공무원(연간 약 7,000명)
  - 교육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자 신고의무제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 지역사회 성 전문기관 연계 및 활용방안 등
  - 교육시간 : 2~3시간
  - 교육비 : 무료
- 행정사항
  - 연간 교육계획 확정 시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 통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Q**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시설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서 시설장에게 보고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시설의 장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해당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초 발견자가 종사자라 하더라도 과태료는 최종책임자인 시설의 장에게도 부과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시설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Q**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A** 당해 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신고 절차와 방법이 궁금해요?

**A**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인근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 상담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Q** 2005년에 기관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만 상담과 치료를 받게 했는데, 갑자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나타나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안 시점이 2006년 6월 30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제도 시행 이전이므로 신고의무는 없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조사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며,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기관에 범죄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신고의 방법은 112신고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 민원담당 경찰관의 상담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실관계 등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 신고의무자는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의 성범죄 사건으로 유무죄 확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신고하지 않고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상담으로만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강하게 거부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우리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라 신고하기가 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살과 15살인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15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13세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 관련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① 소년부 관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감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부록 : 성범죄 경력조회 취업제한 관련 법령 신규 조문 대비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

### ■ 법률

중전 법률(~'13.6.18)	전부개정법률('13.6.19~)
<p>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u>확정된 자</u>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3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p> <p>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사 책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p>	<p>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u>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u>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lt;개정 2013.3.23&gt;</p> <p>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p>

<p>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u>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u>  1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p>	<p>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u>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u>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p>
--	--

	<p>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p>
<p>②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p> <p>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4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학원·교습소</p>	<p>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p>

<p>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4조제1항제1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체육시설</p> <p>3. 보건복지부장관: 제44조제1항제8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9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3호의 의료기관</p> <p>4. 여성가족부장관: 제44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7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및 같은 항 제10호의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5. 국토해양부장관: 제44조제1항제11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신설)</p>	<p>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의 교습자</p> <p>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6조제1항제11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같은 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및 같은 항 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p> <p>3.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p> <p>4.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5. 국토교통부장관: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p> <p>6.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②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7조(권한의 위임) ① 제45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제45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신설)</p>	<p>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③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54조(과태료) 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청</p>	<p>제67조(과태료) ①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p>

<p>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lt;개정 2013.3.23&gt;[본조신설 2011.9.15]</p>	<p>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p> <p>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lt;개정 2013.3.23&gt;[시행일 : 2013.6.19]</p>
<p>(신설)</p>	<p>부칙</p> <p>제7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시행령

중전 시행령(~'13.6.18)	전부개정 시행령('13.6.19~)
<p>(신설)</p>	<p>제24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li> <li>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li> </ol> <p>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p>
<p>제20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조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3.13&gt;</p> <p>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1.24, 2012.3.13&gt;</p> <p>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1.24, 2012.3.13&gt;</p>	<p>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및 회보(回報)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3.15, 2011.1.24&gt;[제목개정 2011.1.24]</p>	<p>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li> <li>2. 자료제출의 일시</li> <li>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li> </ol>	<p>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li> <li>2. 자료제출의 일시</li> <li>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li> </ol>
<p>제21조의2(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이하 "점검·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p> <p>② 점검·확인 결과로서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총 수, 점검·확인 기간 및 점검·확인 기관·인원 수에 대한 점검·확인 현황</li> <li>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li> <li>3.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li> <li>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 [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2.7.31]</li> </ol>	<p>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이하 "점검·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p> <p>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총 수, 점검·확인 기간 및 점검·확인 기관·인원 수에 대한 점검·확인 현황</li> <li>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li> <li>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li> <li>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 [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li> </ol>

<p>제22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lt;개정 2011.1.24&gt;</p> <p>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 등록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p> <p>가. 법 제4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p> <p>나. 법 제46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p>	<p>제3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p> <p>1. 법 제57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p> <p>2.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p>

<p>다.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p> <p>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과 신고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lt;개정 2011.1.24, 2011.12.8&gt;</p> <p>1.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p>	<p>3.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p> <p>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 시·도지사</p> <p>가.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p> <p>나.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직장체육시설 및 등록대상 체육시설</p> <p>다. 법 제5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p> <p>2. 다음 각 목의 시설등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가.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p> <p>나.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신고대상 체육시설</p> <p>다. 법 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p> <p>라.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p> <p>마.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p> <p>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시·도지사</p> <p>가. 법 제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집</p>
--	---

<p>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p> <p>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3.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lt;개정 2011.1.24&gt;</p> <p>1.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p> <p>2.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④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p>	<p>나.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p> <p>다.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의료기관</p> <p>2.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시장·군수·구청장</p> <p>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④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시·도지사</p> <p>가.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p> <p>나.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p> <p>다. 법 제5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p> <p>2.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시장·군수·구청장</p> <p>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4. 법 제5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기획업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⑤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⑥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p>
---	--

<p>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또는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lt;개정 2013.3.23&gt;</p> <p>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p> <p>2.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군·구 교육감</p> <p>3.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p> <p>4.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 또는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시·도가 설립·경영하는 공립유치원: 시·도 교육감</p> <p>2.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시·군·구가 설립·경영하는 공립유치원: 시·군·구 교육감</p> <p>3.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 시·도 교육감</p> <p>4.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시·도 교육감</p> <p>5.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 시·도 교육감</p> <p>6.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의교습자: 특별자치시 교육감 및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p> <p>⑦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p> <p>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	---

■ 시행령 별표

(중전 시행령 : '2013.6.19이전 적용)

[별표 3] <신설 2012.7.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3항	200	250	300
나.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54조 제2항	300	400	500
다. 법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54조 제1항	600	800	1,000

(개정 시행령 : 2013.6.19~)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다. 생략				
나.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 제4항	300	300	300
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3항	300	400	500
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600	800	1,000

■ 시행규칙

종전 시행규칙(~13.6.18)	전부개정 시행규칙('13.6.19~)
<p>제10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① 영 제20조제1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20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영 제20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p>	<p>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p> <p>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p> <p>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p>